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4-50호

「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」(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4-50호)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.

2024년 11월 22일

농림축산검역본부장

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

제정 2024. 11. 22.,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-50호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동물보호법」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 「동물보호법」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자격교육”이란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제32조제1항제3호, 제2항제2호, 제4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충족을 위한 동물보호·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.
2. “정기교육”이란 「동물보호법」 제51조, 제52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매년 2시간 이상 이

수해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대상)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제32조제1항제3호, 제2항제2호, 제4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을 받으려는 자를 말한다.

②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「동물보호법」 제51조, 제52조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.

제4조(교육기관) 이 고시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제32조제2항제4호,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
2.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제32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 중 이 고시 제5조 [별표 1]의 교육기관 기준을 충족한 기관
   가. 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 제6조 각 호에 따른 법인·단체
   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  다. 「농업식품기본법」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

   다만,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만 해당한다.

제5조(교육기관의 인정) ① 제2조에 따른 자격교육 또는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[별표 1]의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준수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 인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[별지 제1호서식]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인정 신청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한다.

1.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, 법인등기부등본

2. 교육기관 인정 기준 [별표 1]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

가. 인력,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확보 현황

나. 교육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

다. 교육진행 방법 및 교육수료 요건, 강사운영 방법 등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내부 운영 규정

라. 기타 [별표 1]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

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실시하여 [별표 1]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[별지 제2호서식]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인정서를 발급한다.

제6조(교육기관의 인정 변경) ①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·법인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[별지 제3호서식]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인정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[별지 제2호서식]에 따른 교육기관 인정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교육기관의 명칭 변경

2. 교육기관의 대표자 변경

3. 교육기관의 소재지 변경

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인정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검토 후 변경된 인정서를 교부한다.

제7조(교육내용 및 교육시간) 제2조에 따른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[별표 2]와 같다.

제8조(교육비용)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에 따른 소요 비용을 교육을

받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.

제9조(교육계획의 승인 등)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 중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차기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.

1. 교육대상자 및 예상 인원
2. 교육방법
3. 교육장소 및 일정, 과목 및 내용, 교육시간
4. 교육강사 선발 및 관리
5.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산출 내역
6. 교육평가 및 수료 기준
7.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

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교육기관의 장은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요구받은 시정 또는 보완사항을 해소하는 대로 즉시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한다. 다만, 최초 교육 실시일의 최소 1개월 이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.

제10조(교육 실시) ① 교육기관은 제9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[별지 제4호서식]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기관은 교육수료 사항을 [별지 제5호서식] 또는 전산자료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1조(교육결과 보고 등)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수료자 명단이 포함된 교육 실시 결과를 회차별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 경우 분기별 교육 실시

결과를 매 분기 후 다음 분기가 시작하는 월의 말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(지도·감독) 검역본부장은 교육기관의 인정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지도·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,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3조(규제의 재검토) 검역본부장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4조(재검토기한) 검역본부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 <제2024-50호 2024.11.22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존 고시의 폐지) 「동물보호·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」(고시 제 2017-33호)을 폐지한다.

제3조(교육기관의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충족을 위한 2024년도 교육계획을 승인받은 교육기관은 이 고시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격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며, 2024년도 교육계획도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.

제4조(교육이수의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

교육기관에서 실시한 “동물보호·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내용”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,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원 자격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

제5조(정기교육의 적용례) 이 고시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은 제1조제1호에 따른 자격교육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

교육기관 인정 기준(제4조 관련)

1. 인력, 시설 및 교육장비: 교육기관은 교육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교육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임차하여야 한다.
   가. 인력: 교육 진행을 위한 관리인력을 둘 것
   나. 강의실: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서 1개 이상일 것
   다. 화장실: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하며, 교육과정에 비추어 적절한 규모일 것
   라. 교육장비: 컴퓨터, 스크린, 빔 프로젝터, 인터넷 전용망을 이용한 교육 및 송출프로그램(비대면 교육의 경우)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(실습을 시행할 경우 실습 장비 포함)
2. 교육강사의 자격요건: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에 대한 강사를 학계, 관련 업계 전문가, 관계 공무원 등 실험동물 보호·복지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.
3. 운영계획서: 교육과정과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4. 내부 운영규정: 다음 각 목이 포함된 교육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
   가. 교육방법(집합교육 또는 비대면 교육)
   나. 교육과정(과목, 내용, 교육시간 등)에 관한 사항
   다.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

라. 교재비, 강사수당 등 교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 관련 사항

마. 교육평가 및 수료 기준에 관한 사항

바. 그 밖에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

[별표 2]

교육내용 및 교육시간(제7조 관련)

1.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격교육

교육과목	교육내용	교육 방법	교육 인정시간
동물실험 관련 법령	가.「동물보호법」 해설 (위원, 동물실험 시행기관장의 준수사항을 포함) 나.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, 기능 등 다. 기타 동물실험에 관한 법령	강의	1
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운영	가. 동물실험계획 심의요령 및 방법 나. 동물실험계획 심의 후 감독 다.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 라. 동물실험시행기관 지도감독	강의	1
동물복지 및 동물실험윤리	가. 동물보호·복지 개념 및 이론 나. 실험동물의 복지와 동물실험윤리	강의	1
동물의 윤리적 사용	가. 실험동물의 취급과 관리 나. 실험동물의 수의학적 관리 다. 실험동물시설의 관리	강의	2
실험동물학	그 밖에 교육기관이 제출하여 검역본부장이 승인한 사항(실험동물학 각론, 동물행동, 기초통계, 동물의 고통평가 및 감소방안 인도적 종료시점 등)	강의	1

2.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

교육과목	교육내용	교육 방법	교육 인정시간
실험동물 보호·복지	가. 동물보호정책 및 동물실험윤리제도 나. 동물보호·동물복지이론 및 국제동향	강의	1
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운영	가.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 및 과학적 이용 나.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다. 그 밖에 교육기관이 제출하여 검역본부장이 승인한 사항(동물실험계획 심의 사례, 동물실험과 관계된 신규 연구개발 동향 등)	강의	1

[별지 제1호서식]

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인정 신청서

신청인	기관명・단체명	설립연도 년 월 일
	대표자명	
	주소 또는 소재지	전화번호
	인터넷 홈페이지 주소	

교육분야	1.「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」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자격교육 □ 2.「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」제2조제2호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정기교육 □

1.「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」제2조제1호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자격교육기관 인정을 신청합니다. □

2.「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」제2조제2호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정기교육기관 인정을 신청합니다. □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

첨부서류	1. 기관(비영리법인 포함)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,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. 2. 교육기관 인정 기준[별표 1]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서류 각 1부. 가.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확보 현황 나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다. 교육내용, 교육진행, 방법 및 교육수료 요건, 강사운영 방법 등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내부 운영규정	수수료 없음 (처리기간 30일)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심사	→	적 합	→	인정서 작성	→	인정서 발급
신청인		농림축산검역본부		농림축산검역본부		농림축산검역본부		농림축산검역본부		

210㎜×297㎜/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제 호

교육기관 인정서

1. 기관명칭 :

2. 주 소 :

3. 대 표 자 :

4. 교육분야 : 자격교육□ 정기교육□

위 기관을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제32조제4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인정합니다.

또는

위 기관을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제36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정기 교육기관으로 인정합니다.

0000년 00월 00일

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직인

210㎜×297㎜(인쇄용지(특급) 120g/㎡)

(뒤쪽)

변경 사항 등		
연 월 일	내 용	확 인(서명 또는 인)

[별지 제3호서식]

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인정 변경 신청서

신청인	기관명 · 단체명		설립연도 년 월 일
	대표자명		
	주소 또는 소재지		전화번호
	인터넷 홈페이지 주소		
	교육분야 자격교육 □ 정기교육 □		

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

「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」 제6조에 따라 교육기관의 인정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

첨부서류		
	1. 기관(비영리법인 포함)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,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. 교육기관 인정서	수수료 없음 (처리기간 10일)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접 수	심사	적 합	인정서 변경사항 작성	인정서 발급
신청인	농림축산 검역본부	농림축산 검역본부	농림축산 검역본부	농림축산 검역본부	

210㎜×297㎜/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[별지 제4호서식]

제 호

수 료 증

소 속 :

성 명(생년월일) :

교육기간(인정시간) :

교 육 명 :

위 사람은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제32조제4항에 따른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또는

위 사람은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제36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의 정기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0000년 00월 00일

교육기관장 직인

210㎜×297㎜(인쇄용지(특급) 120g/㎡)

[별지 제5호서식]

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(자격□, 정기□) 교육 수료증 교부 대장

<기 관 명>

연번	소 속	직급	성 명	교육과정명	교육 일자	교육 시간	수 료 증 발급번호	비 고

* 수료 현황은 자격교육과 정기교육 각 과정별로 별도의 대장을 작성한다